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74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윤영석・이달희・박덕흠

김종양 · 김은혜 · 조경태

박대출 • 곽규택 • 구자근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5배 가까이 급증한 2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디지털 경제의 속성상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위메프 사태 등이 발생하였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들의 판매대금을 다른 기업 매입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위메프 사태는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방증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중개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표준계약서, 상생협약과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일 내에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의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중소 기업, 소상공인 등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합(안 제2조의2 및 제8조의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3호를 신설한다.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대금 지급 시기)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 게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일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 따른 재화 등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제8조제3항을 적용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	
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	
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	
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	
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	
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	
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	
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	
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	
모유통업자"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
	<u>자"라 한다)</u>
<u><신 설></u>	제8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대
	금 지급 시기) ① 통신판매중
	개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재화
	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를

- 의뢰한사업자에게소비자가구매를확정한날부터5일또는소비자에게배송이완료된날부터10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 따른 재화 등의 상품판매대금 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제8조제3 항을 적용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